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 개정 사항('22.6월 ~ 12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사항 ('22.6.10. 일부개정, '22.12.11. 시행)

- ① 연구개발기관이 실시해야 하는 보안관리 조치 사항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 책임자 지정' 명시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①·② (생략)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 ① 연구개발기관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기한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확대('22.12.11. 일부개정, '22.12.11.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 ② **['22년 제도개선 사항]**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수 있는 대상에서 출원 특허 제외 ('22.12.11. 일부개정, '22.12.11.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① ~ ③ (생략)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출원·등록 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 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22년 제도개선 사항]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관리 조치 사항에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책임자 지정’ 명시(’22.12.11. 일부개정, ’22.12.11.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① (생략)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 지정 방안 6. 보안교육 실시 방안 7. 제6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과의 보안에 관한 협력 방안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략)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4. (생략)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제46조(보안관리 조치)법 제21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 6. (생략) <신 설>	제46조(보안관리 조치)법 제21조제3항에서 “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보안책임자 지정

④ [’22년 제도개선 사항] 중앙행정기관 직접수행사업에 대해 3책5공 적용 예외 인정(’22.12.11. 일부개정, ’22.12.11.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생략)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 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⑤ **['22년 제도개선 사항]**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 지원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에서 연구활동비 세부 항목으로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신설 ('22.10.25. 일부개정 및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항목	사용용도	항목	사용용도
아. 연구 활동비	<신 설>	아. 연구 활동비	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⑥ **['22년 제도개선 사항]** 수요자 참여 국가연구개발의 연구비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해 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연구활동비 사용근거 마련 ('22.12.11. 일부개정, '22.12.11.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항목	사용용도	항목	사용용도
아. 연구 활동비	카)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아. 연구 활동비	카)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⑦ **['22년 제도개선 사항]** 제재처분 기준의 명확화 및 합리화를 위해 제재부가금 부과액 산출기준 명확화('22.12.11. 일부개정, '22.12.11.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별표 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		[별표 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의 100분의 150)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중 1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150)

<p>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p>	<p>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 개발비의 100분의 200)</p>	<p>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p>	<p>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0)</p>
---	---	---	---

⑧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22.6.28. 일부개정 및 '22.6.29.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p> <p>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중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관리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p> <p>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해야 한다. 다만,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④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p> <p>⑤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은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 관리·공동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연구개발성과를 유지·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⑥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실적, 제5항에 따른 정보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영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p> <p>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p>	<p>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p> <p><삭 제></p> <p><삭 제></p> <p>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해야 한다. 다만,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④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공개 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공개 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공개할 수 있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 전담기관 에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	2.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담기관 에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22.12.16. 일부개정 및 시행)

① 연구개발기관이 부정행위 검증·조치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할 때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조사기간,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 명시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접수하거나 이관받은 제보 등에 따른 부정행위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를 받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부정행위 검증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 2. 부정행위 검증 기간 3. 부정행위 검증 결과 및 판단 이유를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 4. 부정행위 검증 결과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2.12.21. 일부개정 및 시행)

① 「'22년 제도개선 사항」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및 용도 확대 등*('22.12.21. 일부개정 및 시행)

* 출연연 기본사업에 대한 출장비 사용용도 확대,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신설, 연구실증 참여자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급 근거 신설, 출연연 기본사업에 대한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한 확대, 출연연 기본사업의 기관 공통비용에 대한 간접비 사용방법 명시 등

개정 전	개정 후
<p>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p> <p>5. ~ 8. (생략)</p> <p><신설></p> <p>9. (생략)</p> <p>10.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p>	<p>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해외로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과 법 제4조</u> ----- -----</p> <p>5. ~ 8. (현행과 같음)</p> <p><u>9.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u></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p>11. ----- -----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 -----</p>
<p>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① ~ ④ (생략)</p> <p>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p>

<p>1.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p> <p>2. 3. (생략)</p>	<p>1. -----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또는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 : ----- ----- -----</p> <p>2. 3. (현행과 같음)</p>
<p>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② (생략)</p> <p>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기본사업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④ ~ ⑬ (생략)</p> <p>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4. (생략)</p> <p>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p> <p>6. (생략)</p> <p><신설></p>	<p>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정부출연기관이 수행하는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 받음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같음-----.</p> <p>④ ~ ⑬ (현행과 같음)</p> <p>⑭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지급한 ----- -----</p> <p>6. (현행과 같음)</p> <p>⑮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이 수행하는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같음할 수 있다.</p> <p>1. 지원 대상자가 전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것</p> <p>2. 지원 대상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p> <p>3.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p>

<p><신 설></p>	<p>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제73조 제1항제1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8조(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u>기본사업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u> 계상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p>	<p>제28조(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u>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u> -----. 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43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p>	<p>제43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사업에서 기관 공통 비용을 사용하려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기관 공통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② [’22년 제도개선 사항] 연구수당의 증액 제한 기준 완화(’22.12.21. 일부개정 및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 (생 략)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한다)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u>협약 체결 당시</u>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 ⑦ (생 략)</p>	<p>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u> -----.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구수당을 원래계획보다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제73조 제1항제10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야 한다. 1. <u>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이 증액되는 경우</u> 2. <u>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추가·변경되는 경우</u> 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p>

③ ['22년 제도개선 사항] 학생연구자 처우를 위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향('22.12.21. 일
부개정, '23.3.1. 시행) 및 학생인건비 제도의 행정 간소화('22.12.21. 일부개정 및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① (생 략)</p> <p>②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학생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연구자 연구 참여확약서를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③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 으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과,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p> <p>1.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 월 <u>1,000,000원</u></p> <p>2. 석사과정 : 월 <u>1,800,000원</u></p> <p>3. 박사과정 : 월 <u>2,500,000원</u></p> <p>4. (생 략)</p> <p>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 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생 략)</p> <p>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에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p> <p>3.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u>단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u></p> <p>⑤ ~ ⑧ (생 략)</p>	<p>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u>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③ ----- ----- ----- . ----- .</p> <p>1. ----- <u>1,300,000원</u></p> <p>2. ----- <u>2,200,000원</u></p> <p>3. ----- <u>3,000,000원</u></p> <p>4. (현행과 같음)</p> <p>④ ----- ----- ----- <u>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u></p> <p>1. (현행과 같음)</p> <p>2. ----- ----- <u>학생연구자</u> <u>가</u> ----- -----</p> <p>3. ----- <u>근로소득 및 사업소득</u></p> <p>⑤ ~ ⑧ (현행과 같음)</p>

제90조(학생인건비의 사용)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는 즉시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 해당 과제 참여연구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신 설>

②·③ (생 략)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생 략)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지급률을 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참여확약서를 연구개발기관계정별 및 연구책임자계정별로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3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점검) ①·② (생 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별지 제10호 서식의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5. **별지 제11호 서식의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6.·7.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설>

제90조(학생인건비의 사용) ① -----
-----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 -----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는 분할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턴 30일 이전에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 대신 참여연구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학기**
(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3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3. (현행과 같음)

4.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5.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6.·7.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5호 및 제7호의 자료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 및 제33조제7항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영리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 현물 계상기준 명확화(’22.12.21. 일부개정 및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① ----- ----- ----- - 있는 연구시설·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구입·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 -----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⑤ [’22년 제도개선 사항] 종이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보관 완화(’22.12.21. 일부개정 및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72조(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①·② (생략)</p> <p><신설></p> <p>③ (생략)</p>	<p>제72조(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⑥ [’22년 제도개선 사항] 연구수당 기준 완화,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신설 등에 따른 사전승인 사항 추가(’22.12.21. 일부개정 및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 설>

<신 설>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 략)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라. (생 략)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7. ~ 9.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5. -----

가. (현행과 같음)

나. -----

----- 경우 (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라. (현행과 같음)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나.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다.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7. ~ 9. (현행과 같음)

10.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1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⑦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자의 사용용도 확대(’22.12.21. 일부개정 및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75조(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① (생략)</p> <p>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및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각각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p>	<p>제75조(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국고에 납입하거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 ----- -----.</p>

⑧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변경의 유연화(’22.12.21. 일부개정 및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생략)</p> <p>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학생연구자 업무량 증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증액하려는 경우</p> <p>④ ~ ⑩ (생략)</p>	<p>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 -----</p> <p>④ ~ ⑩ (현행과 같음)</p>

⑨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 제고 및 지정취소 후 행정 명확화(’22.12.21. 일부개정 및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94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3조제3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소명을 거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운영현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완료한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직전 5년 동안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액이 동일한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p>	<p>제94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① ----- ----- ----- ----- -----.</p> <p>1. -----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가 전</p>

에서 지급된 금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 6.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잔액을 종료된 연구개발과제 중 지정 취소일과 종료일이 가까운 연구개발과제 순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있을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은 제외한다.

$$\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 총액} \times (\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잔여 연구개발기간} \div \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⑤ (생략)

<신설>

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

2.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모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잔액 내역을 지정취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확정된 반납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액 산출 시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미 확보된 금액 및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은 제외할 수 있다.

$$\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 총액} \times (\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잔여 연구개발기간} \div \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⑤ (현행과 같음)

⑥ 지정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지정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22.3.1. 시행)으로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적용 제외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22.12.21. 일부개정 및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116조(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① 제18조부터 제72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학술단체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② 제18조부터 제72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학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영 별표 3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같고, 연구개발비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p> <p>③ (생략)</p>	<p>제116조(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삭제></p> <p><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정 (’22.6.20. 제정 및 시행)

※ 8개 부처(과기정통부, 교육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고시

① 혁신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보안대책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보안대책으로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안규정을 마련하였을 경우 해당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해제하는 등 분류가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 여부를 재분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보안과제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한다.

1. 보안과제명
2.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3. 보안과제 분류 또는 해제 사유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44조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연구기관보안대책"이라 한다.)으로써 별표1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을 통일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따르도록 한다.

제5조(연구보안책임자 지정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연구보안책임자의 지정절차·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6조(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내에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변경(연구보안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개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보안대책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8. 보안과제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7조(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2.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3.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4.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서약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소속 연구자와 기타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히 보안상 필요한 경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 등) ①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 또는 외국인 등(본사와 지사의 소재가 다를 때에는 본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과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접촉(연구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 또는 특정하여 유의미한 정도로 접촉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촉 일시·장소·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재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보안심의회 심의를 거쳐 현재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사항을 보고 및 승인 후 1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제9조(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등) ① 보안과제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참여는 내국인을 통한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관하여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려거나 이들에게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승인하려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연구보안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연구보안심의회는 외국인의 보안과제에의 기여 가능성, 기술격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외국에의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었거나 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에 외국인을 참여시킨 경우 해당 사항이 발생하고 1월 이내에 해당 보안과제에서 외국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 연구 등을 위한 협약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또한 참여 외국인의 신상 및 과제 참여 범위, 과제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의 범위 등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등급 표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문서와 다양한 형식의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라 보안등급의 구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보안등급을 정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구분을 준용할 수 있다.

1. I급 :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 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
2. II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3. III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문서의 종류와 보안등급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11조(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보안수당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2. 이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4.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47조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때에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제13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안사고 경위 조사를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다.

1. 조사방식(서면 또는 현장) 및 조사시기
2.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3. 조사반 구성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연구개발결과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보안 과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한 보안과제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했을 때 보안과제로의 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보안과제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3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및 통보한다.

제15조(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 ① 보안과제를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성과의 소유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부터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전받는 기관이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제3조부터

제15조의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비공개 연구개발성과에의 준용) 이 대책은 영 제44조제1항제1호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 제3조 및 제11조는 적용하지 않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비공개를 요청할 때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제8조와 제9조, 제13조, 제15조의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권한의 대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의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부재 또는 전문기관에 관련 보안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조, 제8조 및 제9조, 제14조의 사무를 보안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해 과제의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며, 제12조, 제13조, 제15조까지의 사무는 필요시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으로서 제3조의 사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의 관리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있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전문기관에 두어 운영한다.

제18조 (재검토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